한탄강 사업 추진단 구성 체계적 개발·관리 새출발

총괄·체육시설·기타 3개반 구성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 겸임

포천시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에 컨트럴타워가 없어 체계적인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본보 11월14일자 15면)과 관련, 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미래성장사업단을 주축으로 하는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을 겸임토록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한탄강댐 건설로 조성된 홍수터 부지 개발에 컨트럴타워가 없어 같은 장소를 두고 부서별로 서로 다른 개발이 이뤄져 체계적인 개발은커녕,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원석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컨트럴타워가 없어 발생한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한탄강을 종합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을 겸임토록 했다.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은 총괄반, 체육시설반, 기타 잡목반 등 3개 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모든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 시 추진단의 사전협의 이행과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 관리, 체계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된다.

김영길 단장은 "이번 추진단 구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체계적인 한탄강댐 홍수터개발이 이뤄지고 관광사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성남소방서 119소년단, 불조심 캠페인 성남소방서 소속 한국119소년단이 1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동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조심 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어린이들이 "겨울철 불조심 하세요"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쪼개기 의혹' 남양주 대형유통업체 갈등 심화

〈세계로 식자재마트〉

건축주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 유통업계 "도의적 책임" 지적 시의원 "마트입점 필요" 반박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지점의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과 관련, 인근 지역 유통업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본보 5일자 7면) 건축주가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공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남양주시와 지역 유통업계, A 시의원 등에 따르면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이 제기된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지점 오남읍 양지리 3개 필지와 각각 2천540㎡, 1천955㎡ 규모 건축물의 건축주가 A 남양주 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지난 2004년 구매한 자신의 토지에 올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개 동 건축물에 대한 판매업 행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마트 관계자 측에 대해 10년간 임대 계약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계는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실익만을 바라보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접·오남 지역 유통업계 대표 B씨는 "A 시의원이 대형마트인 줄 알면서도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임대를 주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산건위 소속의 시의원인 공인 입장에서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대형마트를 앞장서서 건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 시의원은 '코끼리(대형) 업체'가 포함된 진정인들의 주체가 의심스럽다며 마트 입점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A 시의원은 "반발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형마트 관계자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나서서 지역상권을 죽인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영세 상인을 현혹해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조성하는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 마트는 이미 임대인과 계약서를 통해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 시의원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A 시의원은 지난 9월 남양주시 오남읍 마트조성 과정에서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를 준 사람과의 분쟁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탄력'

국내 기업 3곳과 투자의향서 체결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스웨덴 마리나항만 개발기업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국내 기업 3곳이 모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ㅋ받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제종길 시장과 국내 기업 3곳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최근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 및 레저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3사의 투자금액은 2천억 원이다.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과 투자금액은 ㈜엘도라도리조트 1천억 원, ㈜마린코리아 600억 원, ㈜한국R&D 400억 원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국내·외 기업 및 마리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9일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해외 마리나 전문기업인 SF 마리나와 2천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국내 투자자와 의향서 체결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국내외 모두 4곳으로 투자금액 규모는 4천억 원에 이른다.

제종길 시장은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국내 최고의 투자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이천 중리지구 일부 토지주, 대토 공급위치 놓고 반발

지정취소·설명회 개최 등 요구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 공급 예정토지 위치계획에 대해 일부 대상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대토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 대토추진위원회(추진위)와 LH 경기지역본부 이천보상사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중리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 대토보상계획공고 계획에 의해 보상 개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내용과 같게 용지보상 계약체결을 안내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한데다 무엇보다 종전의 생활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대토를 계약하려 했으나 도로와 붙은 상업지역은 LH, 단지 내 사업시설은 토지주에게 제공한다는 건 대토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재도 자금난으로 힘든 데 대토지의 계약 후 미분양으로 남는다면 청산절차 등에도 문제가 돼 지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토필지 지정 취소와 함께 추진위와 협의, 대토 설명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대로변의 필지는 생활 대책 용지 대상자에게 우선 보상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협의한 토지주)로 현재로선 이미 계약자와 대토 포기 토지주들이 있어 토지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위더뷰 수원 분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제2017-건축과-분양신고-21호 (2017.12. 8) 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6-건축과-신축허가-71)**
■ **분양사업자에 관한 사항**
・건축주 :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자 : 유호산업개발(주), ㈜태건씨앤씨 ・위탁자 : ㈜더가온누리
■ **분양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6-12외 6필지(16,16-1,16-14,16-17,16-19,16-21)
■ **대지면적** : 1,857.3㎡ ■ **연 면 적** : 20,613.40㎡
■ **공급규모** : 지하4층~지상14층, 생활숙박시설 423실 및 근린생활시설 32호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4층~지상14층 생활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분	B4~B1(일부)	B1(일부)~3F(일부), 14F(일부)	3F(일부)~13F
용도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 **분양개요**

구분	총호실	타입별			기분양완료	금회분양
		A	B	C		
생활숙박시설	423	37.66㎡	40.49㎡	74.72㎡		
		365	55	3	375	48
근린생활시설	32	32개 타입(호실별 면적상이)			30	2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내진성능 확보 여부 :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함.
・내진능력(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 등급)	본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0.002 이상 0.004 미만	I	응답 스펙트럼 방식 : 최대지반가속도(g) = ⅔×S×I×F_a=0.197g S (지진구역계수) : 0.176g (수원) I (중요도계수) : 1.2 Fa (지반증폭계수) : 1.4 응답 스펙트럼 방식으로 적용된 최대 지반가속도(g)는 0.197g이며, 이에 따라 내진능력(MMI등급) VI등급임.
0.004 이상 0.008 미만	II	
0.008 이상 0.017 미만	III	
0.017 이상 0.033 미만	IV	
0.033 이상 0.066 미만	V	
0.066 이상 0.133 미만	VI	
0.133 이상 0.264 미만	VII	
0.264 이상 0.528 미만	VIII	
0.528 이상 1.050 미만	IX	
1.050 이상 2.100 미만	X	
2.100 이상 4.191 미만	XI	
4.191 이상	XII	

■ **생활숙박시설 공급내역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층	타입	호	계약면적				대지면적	분양대금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전용면적	공용면적	설비/주차장	분양면적		토지	건물	분양금액	VAT	총분양금액	계약시	1차(10%) 2018.01.23	2차(10%) 2018.04.23	3차(10%) 2018.10.23	4차(10%) 2019.01.23	5차(10%) 2019.04.23	입실(점) 지정일
3층	B	310	21.75	7.89	10.85	40.49	3.6	44,415,400	90,586,000	135,001,400	9,058,600	144,060,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57,624,000
3층	B	315	21.75	7.89	10.85	40.49	3.6	44,415,400	90,586,000	135,001,400	9,058,600	144,060,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14,406,000	57,624,000
3층	A	318,322~323	20.23	7.34	10.09	37.66	3.4	41,454,400	84,541,455	125,995,855	8,454,145	134,450,000	13,445,000	13,445,000	13,445,000	13,445,000	13,445,000	13,445,000	53,780,000
8층	A	1038~1039	20.23	7.34	10.09	37.66	3.4	38,822,350	79,179,682	118,002,032	7,917,968	125,920,000	12,592,000	12,592,000	12,592,000	12,592,000	12,592,000	12,592,000	50,368,000
10층	A	1037~1039	20.23	7.34	10.09	37.66	3.4	39,151,360	79,844,218	118,995,578	7,984,422	126,980,000	12,698,000	12,698,000	12,698,000	12,698,000	12,698,000	12,698,000	50,792,000
11층	A	1137~1138	20.23	7.34	10.09	37.66	3.4	40,138,370	81,865,118	122,003,488	8,186,512	130,190,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52,076,000
12층	A	1236~1238	20.23	7.34	10.09	37.66	3.4	40,138,370	81,865,118	122,003,488	8,186,512	130,190,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13,019,000	52,076,000
13층	B	1301	21.75	7.89	10.85	40.49	3.6	50,337,460	102,629,582	152,967,042	10,262,958	163,230,000	16,323,000	16,323,000	16,323,000	16,323,000	16,323,000	16,323,000	65,292,000
13층	A	1302~1309	20.23	7.34	10.09	37.66	3.4	48,034,440	97,968,691	146,003,131	9,796,869	155,80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62,320,000
13층	B	1310	21.75	7.89	10.85	40.49	3.6	50,337,460	102,665,945	153,003,405	10,266,595	163,270,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65,308,000
13층	A	1312~1313	20.23	7.34	10.09	37.66	3.4	48,034,440	97,968,691	146,003,131	9,796,869	155,80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15,580,000	62,320,000
13층	B	1314	21.75	7.89	10.85	40.49	3.6	50,337,460	102,665,945	153,003,405	10,266,595	163,270,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65,308,000
13층	A	1315~1328	20.23	7.34	10.09	37.66	3.4	46,718,430	95,283,245	142,001,675	9,528,325	151,530,000	15,153,000	15,153,000	15,153,000	15,153,000	15,153,000	15,153,000	60,612,000
13층	B	1329~1330	21.75	7.89	10.85	40.49	3.6	50,337,460	102,665,945	153,003,405	10,266,595	163,270,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16,327,000	65,308,000
13층	A	1333~1338	20.23	7.34	10.09	37.66	3.4	48,034,440	95,283,245	143,317,685	9,528,325	152,850,000	15,285,000	15,285,000	15,285,000	15,285,000	15,285,000	15,285,000	61,140,000

※ 상기 공급호실 중 청약대상은 310, 315, 318, 322, 323, 838, 1038, 1039, 1137, 1138, 1236~1238, 1301~1310, 1312~1330, 1333~1338호 (총 48개 호실) 이며, 잔여 공급호실은 분양신고(수원시 제2017-건축과-분양신고-2호(2017.02.22)) 및 분양공고(아시아경제, 2017.02.23)에 의거 기계약 완료되었음

■ **근린생활시설 공급내역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층	호수	전용면적	공유면적	공급면적	주차장 기계, 전기실	계약면적	대지면적	분양대금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토지	건물	분양금액	VAT	총분양금액	계약시	1차(10%) 2018.01.23	2차(10%) 2018.04.23	3차(10%) 2018.10.23	4차(10%) 2019.02.23	입실(점) 지정일
1층	109	39.20	24.80	64.00	19.27	83.27	6.7	452,000,000	730,000,000	1,182,000,000	73,000,000	1,255,000,000	125,500,000	125,500,000	125,500,000	125,500,000	125,500,000	627,500,000
3층	301	112.98	46.01	158.99	55.55	214.54	19.1	420,000,000	680,000,000	1,100,000,000	68,000,000	1,168,0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584,000,000

※ 상기 공급호실 중 청약대상은 109호, 301호 (총 2개 호실)이며, 잔여 공급호실은 분양신고(수원시 제2017-건축과-분양신고-2호(2017.02.22)) 및 분양공고(아시아경제, 2017.02.23)에 의거 기계약 완료되었음

■ **공통사항**
・전용면적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음.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층별, 위치별 분양가가 다르니 분양홍보관 에서 별도 확인하기 바람.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면적과 등기면적간 소수점 이하 차이는 별도 정산하지 않음.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함.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입실(점)예정일에 납부하되, 입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실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실(점)일에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주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EV홀, 계단실,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은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됨.
・공급대상은 생활숙박시설 423실 -3type, 근린생활시설 3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공고일(2017.12.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인 분(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1인당 타입별 1실씩 최대5실까지 청약 가능 (단,동일인이 동일타입에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청약일정 및 청약접수 방법 안내

구 분	청약일	청약장소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선정 및 충/호수 결정방법	계약장소/계약일
위더뷰 수원	2017.12.18. (10:00~17:00)	분양홍보관	2017.12.19	청약장소 내 공개추첨	분양홍보관 2017.12.20

・청약 신청금 및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활숙박시설 48개호실 및 근린생활시설 2개호실	500만원	국민은행	581201-01-379360	대한토지신탁(주)	

※ 청약 신청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약장소에서는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타입별 청약 신청금 납부 시 입금증 작성 방법은 "청약타입-청약자 성명" 순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ex: 301호 홍길동 → 301 홍길동)

■ **청약장소에서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청약신청서 (청약장소 비치, 인장사용도 가능)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 신청시	・청약신청서 (청약장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청약신청금 입금확인증표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신청금 환불반을 통장사본(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격으로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숙박시설, 상가 계약,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 확인증표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람.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결정방법**
・당첨자 발표일시 : 2017.12.19(금) 10:00~14:00
・발표장소 : 청약장소 (영통구 센트럴타운로15 (이의동) 아이플렉스 106호)
・당첨자 선정 및 호수 결정방법 : 공개추첨에 의해 각 타입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충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낙첨자 전원)**
・환불일시 : 2017.12.21(목) 15:00 이후
・환불방법 : 신청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 2017.12.20(수) 10:00 ~ 17:00
・계약체결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15 (이의동) 아이플렉스 106호) [분의전화 : 031-257-0603]
・계약금납부 : 국민은행 581201-01-379360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계좌의 계좌입금 및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음(계약자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청약신청서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숙박시설 , 상가 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법인 계약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계약금의 입금증표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청약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숙박시설, 상가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금의 입금증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류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숙박시설, 상가 계약, 위임장)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람.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581201-01-379360	대한토지신탁(주)

※ 분양대금 관리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기 바라며,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회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중도금 및 잔금 연체 등에 유의하기 바람.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기 바라며, 계좌착오 등 각종 입금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위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도금 융자안내**
・대출기관 : 대출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대출금액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생활숙박시설 총 분양대금의 50%이내 /근린생활시설 40%이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사용승인일 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약정조건 변경,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대출조건은 계약자 중 금융기관 대출자격이 되는 분에 한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및 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주변단지의 소속으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과 본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건물의 명칭·조경·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색채, 입면설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조정, 분양가격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여건에 따라 부대시설의 운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각 용도별 계약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함.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계약체결 후 부득이하게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 등을 공제함.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사행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대한토지신탁(주)는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무관하며,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수익률의 변동 및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
・생활숙박시설 운영은 위탁운영업체가 전담하며, 지정된 위탁운영업체와 반드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 **준공예정일** : 2019년 7월 예정
■ **입실(점)예정일** : 2019년 8월 예정
・입실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점)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실 입실점)일이 입실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실점)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형토지신탁**
・본 건축물은 위탁자 (주)다가온누리와 수탁자(신탁회사) 간 건축주인 대한토지신탁(주)간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주)가 건축주로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주)다가온누리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와 "주)다가온누리"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의 권리 및 의무는 본 건축물에 대한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다가온누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유의사항**
・본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위치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증전의 평형 대신 넓이로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면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배분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분양신청 시점과 신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계약에 의해 정산 처리함.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실(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함.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관할청의 기반시설공사 지연과 노사분규(연관업체)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실(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분양가 포함품목만 설치됨.
・분양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일,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택천점유, 가구류, 벽식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분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